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32호 2022. 10. 4.(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45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465호(하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영농보상)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 공고) 16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61호(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64호(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6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20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한 규칙 제명 변경

나.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관서 지정사항 정비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 반영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마. 규칙 조항의 간결한 표현을 위한 약칭 사용 정비

바.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한

규칙 제명 변경

나. 제1관서에 연수청학도서관 추가(안 별표 2)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 반영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및 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마. 규칙 조문의 간결한 표현을 위한 약칭 사용 정비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바.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재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352, FAX : 032-749-7349
- E- mail : taejin82@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연수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3조제1항 중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지방회계법」”으로, “법 제45조제2항”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관서”를 “기타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를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십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장”을 “의회사무국은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7조”를 “제77조제4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05조제1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

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회계직원책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을 “회계직원책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제1관서	기타관서
1. 보건소 2. 연수청학도서관 3. 그 밖에 「지출원」이 있는 관서 (의회, 동 제외)	「지출원」이 없는 관서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이란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 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사무를 집 행하는 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 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 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 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 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 정) ① 「지방회계법」----- -----, -----, 같은 법 제45 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	② ----- 기

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할 수 있다. 다만, 인

타관서 -----
-----.

③ -----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 사람이 -----
--. ----, -----

-----.

④ ----- 「지방회계법 시행령」 -----

----- 그렇지 않다.

⑤ -----

-----.

<단서 삭

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구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이하“본청”이라 한다)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제>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

----- 따른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
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
상경비의 교부

3. 4. (생 략)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
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
하여 처리한다.

1. (생 략)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
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
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서 추정금액이 5십만원 이하
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
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
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
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
임재무관”으로 본다.

그 밖에 -----

3. 4.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에 ----- 따른 -

3. -----

----- 50만원 -----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

-----.

-----.

④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에 게 별표 3의 전결사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④ ----- 의장-----

-----.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

-----.

1. (현행과 같음)
 2. -----
-- 따라 -----
--
 3. ----- 구청장-----
-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

-----.
- ③ -----

따라 -----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해당관서의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②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

-----.

④ -----

---. -----

-- 따라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제12조제3항-----

----- 따라 --

-----.

② -- 제12조제3항-----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 제77조제4항-----

----- 직무대리 규칙---

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 사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 제105조제1항 ----

-- 직무대리 규칙-----

----- 사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

1. ----- 회계직원책임법 -----

2. 회계직원책임법 -----

3. (생략) ② 제1항의 <u>경우에 있어서</u>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u>경우</u> ----- ----- ----- ----- ----- -----.
--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영농보상)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0-210호(2020. 6. 1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203호(2021. 6. 28.)호로 실시계획정정고시된 학나래근린공원 사업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사 업 명: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영농보상)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10. 4. ~ 10. 19.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공원녹지과 / ☎032-749-8722)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 ☎032-569-7566~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6-4번지 등 4필지
- 토지소유자 : 윤○세(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4동 ○호)

8.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선학동 326-6번지 4개소 경작면적 605m²

9. 기 타

-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단위:원/㎡)

지 목	지목별평균치	비 고	지 목	지목별평균치	비 고
전	563,844		철도 용지	523,178	
답	600,354		제 방	306,931	
과 수 원	—		하 천	347,888	
목장 용지	—		구 거	258,790	
임 야	100,040		유 지	417,737	
광 천 지	—		양 어 장	—	
염 전	—		수도 용지	209,500	
대	2,461,032		공 원	423,191	
공장 용지	1,340,665		체육 용지	314,523	
학교 용지	1,654,101		유 원 지	1,138,781	
주 차 장	1,762,371		종교 용지	1,696,604	
주유소용지	2,382,779		사 적 지	228,500	
창고 용지	1,020,355		묘 지	90,147	
도 로	631,427		잡 종 지	758,988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 면 적: 8,548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김영백)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0, 202호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최초인가일 : 2011년 9월 16일
 - 변경인가일 : 2019년 12월 9일
6.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흙막이(가시설) 공법 변경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0.0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09.05.14	중앙공원(센트럴파크)로 향하는 도로	송도동 24-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